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은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시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 용도변경 등 기재사항 변경의 경우 관계기관의 통보 부재, 소방시설 소급적용에 따른 변경,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선임기준일이 명확하지 않아 일선 행정 현장에서 선임 시점에 대한 혼선과 집행력 저하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관련 교육훈련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칙은 연 1회 이상 실시라는 정량적 기준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자위소방대가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시점(예: 신규 대상물 지정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초기 대응체계가 적기에 작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기준일의 세부 처리기준을 신설하고, 신규 지정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자위소방대 편성과 관련자의 교육훈련 시행 시점 등을 명확히 하여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위소방대 등의 연 1회 이상 교육훈련을 최초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정기 교육훈련은 사용승인일 속하는 달에 실시함(안

제11조)

- 나. 시설물 사용, 소방시설 소급설치 등 기준이 미비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신고 사유·기준일을 정함(안 제14조제1항)
- 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연기는 첫 번째 시험일 또는 강습교육 수료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안 제16조제2항)
- 라.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신청자를 관계인 외 소방안전관리자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16조제7항·제17조제3항)
- 마.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을 정함(안 제17조)
- 바. 자격시험 수험자가 소지하지 못하는 전자기기를 정하고, 부정행위자 적발시 세부 처리기준을 정함(안 제24조제1항·3항)
- 사.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피난유도의 안내정보 제공은 최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제공함(안 제35조제1항)
- 아. 근무자·거주자에 대한 훈련·교육 기준일을 정함(안 제36조)
- 자.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 배치기준, 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보완(안 별표 1)
- 차.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실습평가 합격기준을 정함(안 별표 5)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04. 17. ~ 05. 27.)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1항”을 “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12호서식”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월 1회 이상 작성·관리”를 “작성·관리”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4조제5항제3호 및 제4호: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이 별표 1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로 이를 대체하여 작성한다.
2. 법 제24조제5호제6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서 화기를 취급하는 경우(용접, 용단 등 화기 취급, 불꽃 발생 및 불티 작업)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최초로 작성하거나 수

정할 때에는 자위소방대 또는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최초작성 또는 수정작성 시에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제5항 전단 중 “이상”을 “이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초 교육·훈련: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초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정기 교육·훈련: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14조제1항제1호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을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을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일 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날

8. 소방시설의 설치가 소급적용되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③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한 번에 한정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내에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일정을 고려하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일에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연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강습교육 수료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신고 시에 선임증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임이력

확인 발급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한다”를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연기 결과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자격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 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제6항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한 번에 한정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내에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일정을 고려하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

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일에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연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강습교육 수료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6항에 따라 신고 시에 선임증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임이력 확인 발급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제4항(중전의 제3항) 후단 중 “확인해야 한다”를 “확인해야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연기 결과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 (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고,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되지 않거나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수료증을 확인하고,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수료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 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까지

2.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업무가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그 선임신고와 함께 선임증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할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임이력 확인 발급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건설현장 소방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설현장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한 날

2. 수정 작성: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및 교육 계획,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훈련 계획, 피난로 확보 계획 등 소방계획서의 작성 내용이 변경된 날

제19조 중 “같다”를 “같고, 처분은 별지 제37의2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21조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22조제4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다”를 “누리집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추가로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8호 중 “전자기기 등을”을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인 또는 서명 등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하여 거부사실을 적고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 서명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감독관 1명 이상과 함께 서명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25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날 전”을 “달의 말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6개월(영별표 5 제2호마목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지정된 사람의 경우 3개월을 말한다)”을 “6개월”로, “날 전”을 “달의 말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최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정하여 고시한다”를 “정한다”로 한다.

제36조제1항 본문 중 “이상”을 “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최초 훈련·교육: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정기 훈련·교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제45조제3항 중 “인터넷 홈페이지”를 “누리집”으로 한다.

제46조 중 “같다”를 “같고, 처분은 별지 제37의2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른다”로 한다.

제48조제1항 중 “영 제47조제2항”을 “조치명령등의 기간만료 5일전까지 영 제47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1호로 하며, 같은 표 제3호(종전의 제1호) 가목 3급의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제3호나목부터 마목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표에 다목부터 사목까지 및 다목부터 나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1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비고를 삭제하고, 같은 표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마.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 4]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는 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항목 중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분야는 생략할 수 있다.

사. 관리업자 또는 대행인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 최단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

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3. 업무대행의 방법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 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하거나 오동작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도 점검하여야 한다.

나. 방문 점검 시 내부 공사(건축, 설비 등) 또는 내부 구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업무대행의 범위

가.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나. 발주자와 관리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세부 업무대행 범위 등을 정하되, 표 4의 점검표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2.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따른다.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 최단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3. 업무대행의 방법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하거나 오동작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도 점검하여야 한다.

나. 방문 점검 시 내부 공사(건축, 설비 등) 또는 내부 구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마.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 4]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는 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의 작성항목 중 소방시설

과 피난·방화시설 분야는 생략할 수 있다.

사. 관리업자 또는 대행인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표 4]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점검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별표 2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별표 5 제2호다목 본문 중 “평가기준”을 “평가결과 항목별 60점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4호서식의 앞쪽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제3조(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연기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연기 신청을 한 사람은 제14조제2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의 연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의 게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게시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게시해야 한다.

제5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

리자업무 대행인력·자격자를 배치하거나 수행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제6조(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의 기록 작성 주기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1 표 4의 소방안전관리자업무 대행 점검표의 기록 작성 주기 적용은 신규 대상의 경우 이 규칙 시행 이후 계약한 대상부터 적용하고, 기존 계약 중인 대상은 이 규칙 시행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제5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의 적용 시점은 최초 교육·훈련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를 처음 구성·운영하는 대상부터 적용하고, 정기 교육·훈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8조(피난계획의 수립·시행의 작성 관한 경과조치) 제34조제3항에 따른 피난계획의 작성 중 최초작성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피난계획을 처음 작성하는 대상부터 적용하고, 수정작성은 2026년 8월 1일 이후 피난계획에 변경사항이 있는 대상에 적용한다.

제9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제36조제1항에 따른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의 적용 시점은 최초 교육·훈련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신설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부터 적용하고, 정기 교육·훈련은 2026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	------	------	------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물 명칭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개)
	사용승인일자	선임사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경매등	[]해임 등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예정자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임예정분야	[]2급소방안전관리자	[]3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기간
	자격시험	응시접수일자	응시번호	시험일자

선임연기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선명시까지 안전조치 계획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담당자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	수수료
확인사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여부	없음
주의사항	선임연기 기한은 최초 신청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수료일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 제14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제7호 중 “업무”를 “업무(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로 한다.

별지 제1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의2서식 및 별지 제17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을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연기기간	(당초 조사일자 :)			
	연기사유	[] 천재지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 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소방대상물의 공사, 휴·폐업 등			
	기타 필요한 사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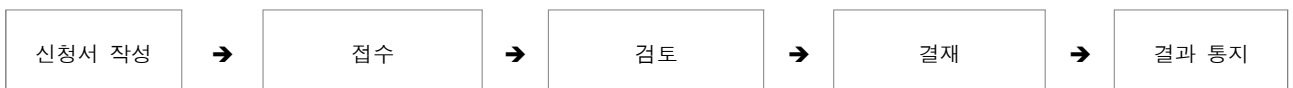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 (소방업무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연기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연기신청 대상물	대상물 명칭(업체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임개요	선임사유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경매등 ☐ 기타()			
	선임종류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급 ☐ 3급			
	사용승인일 등		선임기한		신고기한
연기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	승인 여부 ☐ 승인 ☐ 미승인(사유 :)				
	연기 기한				
	조치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연기 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취득 또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한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대상물 명칭	용도					
	소재지(주소)						
	건축물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기타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관리권원분리	[] 복합건축물	[] 지하가	[] 도매·소매·전통시장			
	[] 해당 [] 해당없음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신고인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업무대행 [] 해당 [] 해당없음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해당	[] 해당없음					
선임증 등 발급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증	[]발급 []미발급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은 뒤쪽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현황

선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전화번호	비고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구분	대상물 명칭	용도	연면적(㎡)	선임등급	선임자명	선임구역
총괄						
권원						
권원						
권원						
권원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현황

선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선임구역	전화번호

[]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현황

대상물 명칭	용도	연면적(㎡)	선임등급	비고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자 현황

적용조문	선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다른 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명칭	자격번호
[]법 제29조제3항					
[]법 제30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주 의 사 항

1. 법 제30조제2항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자등(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에 한함
2. 법 제32조제2항 적용대상은 산업단지등(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협동화단지, 공동방주시설이 설치된 지역, 집단화지역)에 한함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선임자	성명	한글		생년 월일	
		한자			
	주소				
	전화번호	☎			
HP					
선임 대상물	선임기간	대상물 명칭	소재지	선임등급	선임구분
신청사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이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선임자는 선임이력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선임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3. 선임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건설현장으로 구분한다.
4. 선임구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 구분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임사항	근무기간		선임 대상물			
	부 터	까 지	대상물 명칭	선임등급	선임구분	업무대행 선임여부 (Y/N)
총 근무기간						
용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후단, 제16조제7항 후단 및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 코드	처리기간 즉시
------	------	-------	---------

선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자격증	등급		자격번호	

대상처	대상			연락처	
	주소				
	대상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선임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증	등급		자격번호	
	선·해임일	선임일		해임일	
	해임사유				

신청사유					
------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및 제16조 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1. 신분증
 제출서류 2.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인적사항	성명			생년 월일	
	주소				
대상처	대상				
	주소				
	대상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선임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증	등급		자격번호	
	선·해임일	선임일		해임일	
용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및 제16조 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이
가
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소재지 건축물 등 등급	용도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 특급 [] 1급 [] 2급 [] 3급
신고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	성명 주인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 HP
선임증 발급	[]발급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수료여부(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행정처분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H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번호 :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번호 :		
대상명	대상			
	위치			
위반사항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일자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행정처분	처분사항	☐ 자격취소 ☐ 자격정지(개월) ※ 정지기간 : . . . ~ . . . ☐ 지정취소 ☐ 업무정지(개월) ※ 정지기간 : . . . ~ . . . ☐ 경고(시정명령)		
	처분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의
제
의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명령	대상			용도	
	소재지				
	명령기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기타			
	명령사항	[] 소방대상물 개수 [] 소방대상물 이전·제거·사용금지(제한, 폐쇄)·공사정지(중지) 등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명령내용				
연장신청	기간연장				
	연장사유	[] 천재지변 []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 변동 중 또는 변동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 소방대상물 관계인 여러 명으로 구성 의견조정 어려움 [] 관계인 운영 사업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발생 [] 기타()			
	안전조치계획	※ 필요시 별첨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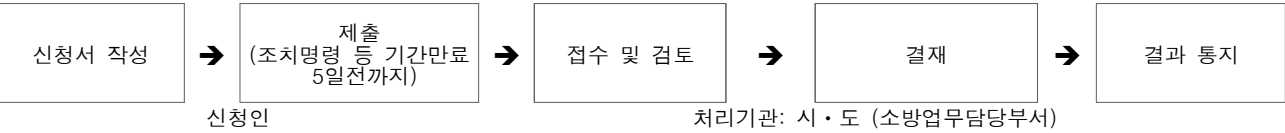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검토사항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④ (생략) ⑤ 소방청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u>인터넷 홈페이지</u>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⑥ (생략)	제2조(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u>누리집</u> -----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화재예방강화지구 및 영 제16조 제1항 각 호의 장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 <u>법 제17조제1항</u>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 ④ (생략)	제7조(화재예방 안전조치 등) ① ----- ----- ----- <u>법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u>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① 영 제25조 제1항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소방안전관리자는 <u>법 제24조제5항제7호</u> 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을 <u>별지 제12호서식</u> 에 따라 월 1회 이상 작성·관리해야 한다.	제10조(소방안전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기록·유지) ① ----- ----- ----- ----- ----- ----- ----- --- <u>다음 각 목과 같이 별지 제12호서식</u> ----- <u>작성·관리</u> -----

<신 설>

<신 설>

②·③ (생 략)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
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
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
제2호에 따른 자위소방대를 다
음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편성·운영하
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규모
·용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응급구조 및 방호안전기능 등을
추가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편

--.

1. 법 제24조제5항제3호 및 제4
호: 월 1회 이상 실시하되, 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관
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점검인력이 별표 1의 ‘소방안
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로 이
를 대체하여 작성한다.

2. 법 제24조제5호제6호: 소방안
전관리대상물에서 화기를 취
급하는 경우(용접, 용단 등 화
기 취급, 불꽃 발생 및 불티
작업)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
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등)
① -----

성할 수 있다. <후단 신설>

1. 2. (생략)

② (생략)

③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법 제24조제5항제2호에 따른 초기대응체계를 제1항에 따른 자위소방대에 포함하여 편성하되,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근무하는 사람의 근무위치, 근무인원 등을 고려한다. <후단 신설>

④ (생략)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자위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상

----- . 이 경우,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소방계획서를 최초로 작성하거나 수정할 때에는 자위소방대 또는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 . 이 경우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서 소방계획서 최초작성 또는 수정작성 시에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 이이상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태 및 초기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편성된 근무자에 대한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초기대응체계에 편성된 근무자 등에 대해서는 화재 발생 초기 대응에 필요한 기본 요령을 숙지할 수 있도록 소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⑥ ~ ⑧ (생략)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및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1.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

-----.

1. 최초 교육·훈련: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최초 선임된 날부터 60일 이내

2. 정기 교육·훈련: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

-----.

1.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에서 같다)

2. ~ 5. (생략)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로서 그 업무대행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이 끝난 날

 --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물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된 날을, 시설물의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저장·관리되고 있는 날을 말하고, 건축물관리대장,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를 통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에 기재된 ---

2.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업무대행을 감독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고, 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일 또는 해당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

7. (생략)

<신설>

② (생략)

<신설>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된 날

7. (현행과 같음)

8. 소방시설의 설치가 소급적용되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한 번에 한정한다. 이 경우 연기 기간 내에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일정을 고려하되,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일에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연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강습교육 수료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④ -----

의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또는 시험응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4조제5항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④ (생략)

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총괄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사람을 포함한다)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5호서

----- 하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별지 제14호의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연기 결과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

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 4. (생략)
<신설>

-----.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확인하는 경우 자격증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2. ~ 4. (현행과 같음)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6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고 신고 시에 선임증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별지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제5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의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등이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임이력 확인 발급 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삭 제>

⑦ · ⑧ (생략)

<신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② (생략)

<신설>

⑧ · ⑨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같음)

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7호의2 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 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6조(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신고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연기 신청은 한 번에 한정한다. 이 경우 연기기간 내에 한국소방안전원의 교육 일정을 고려하되,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일에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실시되는 법 제34조에 따른 강습교육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일에 신청해야 하며, 연기기간은 연기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되, 해당 강습교육 수료일 또는 시험일로부터 5일

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선임 연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종합정보망에서 강습교육의 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④ (생략)

⑤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8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영 별표 5 제2호의 자격요건 중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하며, 전자

이내로 한다.

④

----- 확인해야 하고, 별지 제14호의2서식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연기 결과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자 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1. 제18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영 별표 4에 따른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강습교육 수료증

3. (생략)

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별표 5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

-----,

-----.

<삭 제>

2.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1. (현행 제3호와 같음)

<삭 제>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의 사본을 제출
하도록 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
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
자를 선임하고 제5항에 따라 신
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
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
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
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
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
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
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6항에 따라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이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
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국가자격증(영 별표 5 제
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고, 행정정
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
되지 않거나 선임된 소방안전
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
지 않으면 국가기술자격증 또
는 국가자격증의 사본을 제출
해야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소방안전
관리자 등 종합정보망을 통하
여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
는 수료증을 확인하고, 선임된

<신 설>

⑧ (생 략)

<신 설>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수료증의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⑧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보조자선임대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고 제6항에 따라 신고 시에 선임증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임이력 확인 발급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⑨ (현행 제8항과 같음)

⑩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소방본부장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신고) <신 설>

또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7호
의2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 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소방안
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7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의 선임신고) ①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대상물(이하 “대상물”
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일부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
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로 인
하여 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자를 새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일까지

2. 소방안전관리자의 해임, 퇴직
등으로 해당 업무가 종료된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의 공사시공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9호 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는 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선임신고를 할 수 있다.

경우: 소방안전관리자가 해임
된 날, 퇴직한 날 등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1. ~ 3. (현행과 같음)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공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인이 종전의 선임이력에 관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우,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 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할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가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선임이력 확인 발급신청서에 따라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력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삭 제>

③ · ④ (생략)

<신설>

<신설>

④ · 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⑥ 제1항제1호에 따라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시
공자는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
될 때까지 법 제29조제2항에 따
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업무
를 수행하여야 한다.

⑦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
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제29조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건설현장
소방계획서를 효과적으로 시행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
설현장 소방계획서를 작성하거
나 정비하여야 한다.

1. 최초 작성: 신축, 증축, 개축,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으
로 인하여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한 날

2. 수정 작성: 초기대응체계 구
성‧운영 및 교육 계획,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훈련 계획, 피난로 확
보 계획 등 소방계획서의 작
성 내용이 변경된 날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소방청장은 특급, 1급,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를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 ③ (생략)
④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을 종료한 날부터 30일(특급 소방안전관리 자격시험의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합격자를 공고하고,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려 줄 수

제19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의 정지 및 취소 기준) -----

-- 같고, 처분은 별지 제37의2 호서식의 행정처분 통지서에 따른다.

제21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공고) -----

----- 누리집-----
-----.

제22조(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누리집에 합격자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추가로 응시자에게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합격 여부를 알

있다. <후단 신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소
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략)

8. 수험자가 시험시간에 통신기
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
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다른
수험자를 위하여 답안을 송신
하는 행위(해당 물건의 휴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를
포함한다)

9. ~ 11. (생략)

② (생략)

<신설>

려 줄 수 있다.

제24조(부정행위 기준 등) ① ---

-----.

1. ~ 7. (현행과 같음)

8. -----
--- 전자기기[휴대용 전화기,
휴대용 개인정보단말기(PD
A), 휴대용 멀티미디어 재생
장치(PMP), 휴대용 컴퓨터,
휴대용 카세트, 디지털 카메라,
음성파일 변환기(MP3),
휴대용 게임기, 전자사전, 카
메라 부착 펜, 시각 표시 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를 --
--

9. ~ 11.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부정
행위를 하는 응시자를 적발한
때에는 즉시 수험행위를 중지시
키고, 부정행위자로부터 그 사
실을 확인하고 서명한 확인서를
받아야 하며, 부정행위자가 확
인 또는 서명 등을 거부하는 경
우에는 감독관이 확인서를 작성

	<u>하여 거부사실을 적고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서명한 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증자료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감독관 1명 이상과 함께 서명한 확인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u>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생략)	제25조(강습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강습교육 실시 2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에 강습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공고해야 한다.	② ----- ----- ----- ----- ---- <u>누리집</u>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생략)	제29조(실무교육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② 소방청장은 실무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실무교육 실시 30일 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에 실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u>인터넷 홈페이지</u> 에 공고하고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 ----- ----- ----- ---- <u>누리집</u> ----- ----- --.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날부터 6개월	③ ----- -----

달의 말일

④ -----

----- 6개월 -----

----- 달의 말

일-----

----- .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을 수료한 날을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 본다.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

공) ①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피난유도 안내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1. ~ 4. (생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

-----.

제34조(피난계획의 수립·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정한다.

제35조(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

공) ① -----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에 최초로 소방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

1. ~ 4. (현행과 같음)

② -----

----- 정한다.

제3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 -----

----- 이상 다음 각 호에서

다. 다만,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
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에
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
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추가로 실시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④ (생 략)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 ② (생 략)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
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내
용을 소방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진단기관
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
분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정하는 기간 내에 -----

---. -----

-----.

1. 최초 훈련·교육: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용도

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

물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최초

선임한 날부터 60일 이내

2. 정기 훈련·교육: 건축물의 사

용승인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진단기관의 지정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누리집-----

-----.

제46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

----- 같고, 처분은

별지 제37의2호서식의 행정처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한다)의 기간연장을 신청하려는 관계인 등은 <u>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에 따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조치명령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② (생략)	<u>분 통지서에 따른다.</u> 제48조(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① ----- ----- ----- ----- ----- <u>조치명령등의 기간만료 5일전까지 영 제47조제2항</u>----- ----- ----- ----- ----- ----- -----. ② (현행과 같음)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의 배치기준·자격 및 방법 등 준수사항

(제12조 관련)

1. 업무대행의 범위

가. 업무대행의 범위는 영 제28조제2항에서 정하는 업무로 한다.

나. 발주자와 관리업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세부 업무대행 범위 등을 정하되,
표 4의 점검표에 포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에 따라 고시된 법인 또는 단체는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에 사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서식을 작성하여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라. 발주자와 관리업자 간에 체결한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발주자 또는 관리업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된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알리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실을 확인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관리업자가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받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한 발주자 또는 관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다른 관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해야 한다.

2. 업무대행 인력의 자격기준

가. 대행인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 관리업에 등록된 기술인력을 말한다.

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제3호 다목의 소방시설 자체점검 점검자의 기술등급에 따른다.

3. 업무대행 인력의 배치기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영 제28조제2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인력(이하 “대행인력”이라 한다)을 배치해야 한다.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기준

[표 1] 소방안전관리등급 및 설치된 소방시설에 따른 대행인력의 배치 등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1급 또는 2급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	중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3급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초급점검자 이상 1명 이상

비고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은 영 별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을 말한다.
2.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초급점검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외에 제연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스프링클러설비에는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하고, 물분무등소화설비에는 호스릴(hose reel)방식은 제외한다.
4. 표에서 소방안전대상물의 등급과 설치된 소방시설의 종류가 다른 경우는 설치된 소방시설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나. 대행인력 1명의 1일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업무량은 [표 2] 및 [표 3]에 따라 산정한 배점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이 합산점수는 8점(이하 “1일 한도점수”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표 2]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면적별 배점기준표(아파트는 제외한다)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연면적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1,500㎡ 미만	0.8	0.7	0.6
	1,500㎡ 이상	1.0	0.8	0.7
	3,000㎡ 미만	1.2	1.0	0.8
	3,000㎡ 이상			
	5,000㎡ 미만	1.9	1.3	1.1
	5,000㎡ 이상 10,000㎡ 미만			

	10,000㎡ <u>이상</u> 15,000㎡ <u>미만</u>	-	1.6	1.4
비고				
1.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 세대부를 제외한 연면적과 세대수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의 종합점검 대상의 경우 32, 작동점검 대상의 경우 40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더하여 연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환산한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u>이상</u> 인 경우에는 <u>연면적 범위를 1만제곱미터이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본다.</u>				
2. 터널, 지하구의 연면적 계산은 「그 길이와 평균 폭을 곱하여 계산된 값을 말한다.				

[표 3] 하나의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아파트 배점기준표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	세대구분	대행인력 등급별 배점		
		초급점검자	중급점검자	고급점검자 이상
3급	전체	0.7		
1급 또는 2급	30세대 미만	0.8	0.7	0.6
	30세대 이상	1.0	0.8	0.7
	50세대 미만	1.2	1.0	0.8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1.9	1.3	1.1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	1.6	1.4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	2.0	1.8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2.3	2.1
	1,000세대 <u>이상</u>			

다. 하루에 2개 이상의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간의 이동거리(좌표 최단거리를 말한다) 5킬로미터 마다 1일 한도점수에 0.01를 곱하여 계산된 값을 1일 한도점수에서 뺀다. 다만, 육지와 도서지역 간에 차량 출입이 가능한 교량으로 연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없는 시·군 지역은 제외한다.

라. 2명 이상의 대행인력이 함께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표 2] 및 [표 3]의 배점을 인원수로 나누어 적용하되,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절사한다.

마. 영 별표 4 제2호가목3)에 해당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표 2]의 배점에 10%를 할증하여 적용한다.

4. 업무대행의 방법 및 점검표

가. 소방시설 점검 시에는 공용부 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이 동작하거나 오동작한 경우에는 해당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도 점검하여야 한다.

나. 방문 점검 시 내부 공사(건축, 설비 등) 또는 내부 구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점검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 계단, 통로 등 피난통로에 피난에 장애가 되는 물건 등이 쌓여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동하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라.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마. 점검이 완료된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점검 결과를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행 중 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계인에게 알리고, [표 4]에 기록하여야 한다.

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자는 월 1회 이상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때 [표 4]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작성하여 관계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기록표 중 작성항목의 소방시설과 피난·방화시설 분야는 생략할 수 있다.

사. 관리업자 또는 대행인력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아.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표 4]의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를 점검일을 기준으로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표 4]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점검표

건물명		점검일	년 월 일(요일)
주 소			
점검업체명		건물등급	급
설비명	점검결과 세부 내용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방화구획	
기타	

확인자	관계인(<u>소방안전관리자</u>)	(서명)
기술인력	대행인력의 기술등급: 대행인력:	(서명)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제15조제2항 관련)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대상명:)

이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년 월 일)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급: 급

☐ 소방안전관리자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위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이 표지를 붙입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연락처:

비고

○ 이 현황표의 규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크기, 재질, 글씨체를 정할 수 있다.

1. 크기: A3 용지(가로 420밀리미터 × 세로 297밀리미터)
2. 재질: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
3. 글씨체

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나눔고딕Extra Bold 46포인트(흰색)

나. 대상명: 나눔고딕Extra Bold 35포인트(흰색)

다. 본문 제목 및 내용: 나눔바른고딕 30포인트(검정색)

라. 하단내용: 나눔바른고딕 24포인트(검정색)

마. 연락처: 나눔고딕Extra Bold 30포인트(흰색)

4. 바탕색: 남색(RGB: 28,61,98), 회색(RGB: 242,242,242)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주출입구 또는 주용도로 사용되는 장소에 출입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게시한다.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강습교육 과목, 시간 및 운영방법(제28조 관련)

1. 교육과정별 과목 및 시간

교육대상	교육과목	교육시간
가. 영 별표 4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에 소방안전관리자가 되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160시간
	화재통계 및 피해분석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전기·가스 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위험물안전관계 법령 및 안전관리	
	재난관리 일반 및 관련 법령	
	초고층재난관리 법령	
	소방기초이론	
	연소·방화·방폭공학	
	화재예방 사례 및 홍보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적용기준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종합방재실 운용	
	피난안전구역 운영	
	고층건축물 화재 등 재난사례 및 대응방법	
	화재원인 조사실무	
	위험성 평가기법 및 성능위주 설계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가	
	방재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이론·실습·평가	
	자체점검 서식의 작성 실습·평가	
	통합안전점검 실시(가스, 전기, 승강기 등)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화재피해 복구	
	초고층 건축물 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소방신기술 동향	
	시청각 교육	
나. 영 별표 4의 1급 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80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종합방재실 운영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 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구조 및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다. 영 별표 4의 2급 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40시간
	소방 관계 법령(건축 관계 법령 포함)	
	소방학개론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점검·실습·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 가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형성평가(시험)	

라. 영 별표 4의 3급소 방안전관리 대 상 물 에 소방안전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소방 관계 법령	24시간
	화재일반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의 구조 · 점검 · 실습 · 평가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작동기능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마. 영 제40 조의 공공 기관에 소 방 안 전 관 리자가 되 려는 사람	형성평가(시험)	40시간
	소방안전관리자 제도	
	직업윤리 및 리더십	
	소방 관계 법령	
	건축 관계 법령	
	공공기관 소방안전규정의 이해	
	소방학개론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소방시설(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설비, 소화활동설비)의 구조·점검·실습·평가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 감독	
	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및 감독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피난약자의 피난 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구성 등 이론·실습·평 가	
	작동기능점검표 및 외관점검표 작성 실습·평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바. 법 제24 조 제3항에 따른 업무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16시간
	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실습·평가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 우수사례 토의	
	형성평가(수료)	
	소방 관계 법령	
	소방안전관리업무대행 감독	
	소방시설 유지·관리	

대행 감독 소방안전 관리자가 되려는 사 람	화기취급감독 및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소방계획의 수립 이론·실습·평가(업무 수행기록의	
	작성·유지 및 피난약자의 피난계획 등 포함)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등 이론·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이론·실습·평가	
	화재 시 초기대응 및 피난 실습·평가	
사. 법 제29 조 제1항에 따른 건설 현장 소방 안전 관리 자가 되려 는 사람	형성평가(수료)	24시간
	소방 관계 법령	
	건설현장 관련 법령	
	건설현장 화재일반	
	건설현장 위험물·전기·가스 안전관리	
	임시소방시설의 구조·점검·실습·평가	
	화기취급감독 및 화재위험작업 허가·관리	
	건설현장 소방계획 이론·실습·평가	
	초기대응체계 구성·운영 이론·실습·평가	
	건설현장 피난계획 수립	
	건설현장 작업자 교육훈련 이론·실습·평가	
	응급처치 이론·실습·평가	
	형성평가(수료)	

2. 교육운영방법

가.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편성기준

교육대상	시간 합계	이론 (30%)	실무(70%)	
			일반 (30%)	실습 및 평가 (40%)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160시간	48시간	48시간	64시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80시간	24시간	24시간	32시간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 전관리자	40시간	12시간	12시간	16시간
3급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업무 대행감독 소방안전 관리자	16시간	5시간	5시간	6시간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24시간	7시간	7시간	10시간

나. 가목에 따른 평가는 서식작성, 설비운용(소방시설에 대한 점검능력을 포함한다) 및 비상대응 등 실습내용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다. 교육과정을 수료하려는 사람은 가목에 따른 교육시간 합계의 90퍼센트 이상을 출석하고, 나목에 따른 실습내용 평가에 합격(해당 평가항목을 이수하

거나 평가결과 항목별 60점 이상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해야 한다. 다만, 결강시간은 1일 최대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라.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강습과목 중 일부 과목은 16시간 범위에서 원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마. 구조 및 응급처치과목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과 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화재안전조사 연기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신청내용	대상명				
	주소			전화번호	
	연기일자	(당초 조사일자 :)			
	연기사유	☐ 천재지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항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의 경우 ☐ 권한 있는 기관에 자체점검기록부, 교육, 훈련일지 등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장부, 서류 등이 압수되거나 보관되어 있는 경우 ☐ 소방대상물의 공사, 휴·폐업 등			
	기타 필요한 사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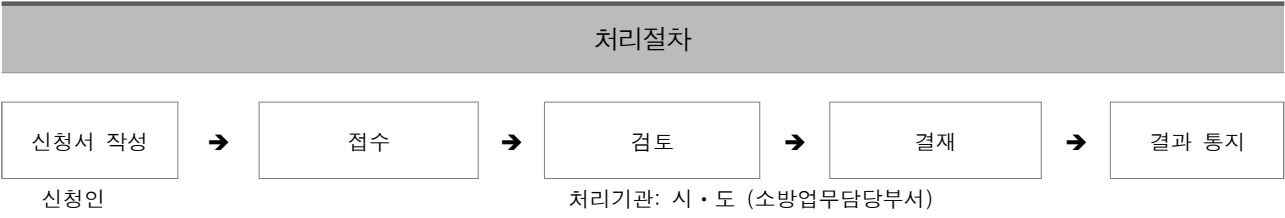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화재안전조사의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화재안전조사를 받기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서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	------	------	------	----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대상물 명칭			용도	
	대표자			전화번호	
	주소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개)
	사용승인일자	선임사유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변경
			[]경매등	[]해임 등	[]기타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예정자

소방안전관리업무 강습교육 접수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응시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선임예정분야	[]2급소방안전관리자	[]3급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강습교육	접수일자	접수번호	교육기간
자격시험응시자	자격시험	응시접수일자	응시번호	시험일자

선임연기 기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선임시까지 안전조치 계획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담당자 확인사항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 응시 여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 접수 여부	수수료 없음
주의사항	선임연기 기한은 최초 신청한 시험일 또는 강습교육 수료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함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연기 결과 통보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3일
연기신청 대상물	대상물 명칭(업체명)			
	소재지(주소) (전화번호)			
신청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선임개요	선임사유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대수선 ☐ 용도변경 ☐ 경매등 ☐ 기타()		
	선임종류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2급 ☐ 3급		
	사용승인일등		선임기한	신고기한
연기사유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은 경우			
처리결과	승인 여부 ☐ 승인 ☐ 미승인(사유 :)			
	연기 기한 -			
	조치 사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 연기 신청 처리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 소방본부장 · 소방서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격증 취득 또는 강습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한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대상물 명칭	용도					
	소재지(주소)						
	건축물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동수	기타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관리권원분리	[] 복합건축물	[] 지하가	[] 도매·소매·전통시장			
	[] 해당 [] 해당없음	[]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안전관리자 1명 선임				
신고인	관계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또는 상호·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업무대행 [] 해당 [] 해당없음	상호	면허번호(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계약기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HP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해당	[] 해당없음				
선임증 등 발급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발급 []미발급	선임이력 확인서	[]발급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같은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 및 소방안전관리업무의 대행 계약서 사본(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증(자격수첩을 포함한다) 4. 계약서 또는 권원이 분리됨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법 제35조에 따른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음
-------------	---	-----------

작성 방법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직위를 지정하여 선임하는 경우에는 직위란을 적습니다. 2. 총괄소방안전관리자인 경우 총괄소방안전관리자란에 √표 합니다. 3. 관리권원분리란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선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다른 안전관리자와 겸직은 뒤쪽에 작성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a/㎡) 또는 중질지(80a/㎡)]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뒤쪽)

[]소방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현황

선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전화번호	비고

[]관리의 권원별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현황

구분	대상물 명칭	용도	연면적(㎡)	선임등급	선임자명	선임구역
총괄						
권원						
권원						
권원						
권원						

관리의 권원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현황

선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선임구역	전화번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의 겸직 현황

대상물 명칭	용도	연면적(㎡)	선임등급	비고

다른 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자 현황

적용조문	선임자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다른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자격명칭	자격번호
[]법 제29조제3항					
[]법 제30조제2항					
[]법 제32조제2항					

주의사항

1. 법 제30조제2항 적용대상은 중소기업자등(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외의 제조업)에 한함
2. 법 제32조제2항 적용대상은 산업단지등(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협동화단지, 공동방지지설이 설치된 지역, 집단화지역)에 한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증

[] 소방안전관리자

[] 총괄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 관리대상물 (건설현장)	대상물명			등 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소재지 (연락처)			선임범위		
	건축물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소방안전	성명				생년월일	
관리자	주소				전화번호	
(보조자)	선임일자				자격등급	
대행업체	업체명				계약기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및 제1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총괄소방안전관리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업무대행 감독자로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의 따라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강습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관리 4.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시설의 관리 5. 소방훈련 및 교육 6. 화기 취급의 감독 7.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기록·유지 8.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9.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건설현장 소방계획서의 작성 2. 임시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감독 3. 공사진행 단계별 피난안전구역, 피난로 등의 확보와 관리 4. 건설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소방안전 교육 및 훈련 5.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및 교육 6. 화기취급의 감독, 화재위험작업의 허가 및 관리 7. 그 밖에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에 관련하여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업무(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12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확인 발급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	------	------	---------

선임자	성명	한글	생년월일		
		한자			
	주소				
	전화번호	☎			
		HP			

선임 대상물	선임기간	대상물 명칭	소재지	선임등급	선임구분

신청사유					
------	--	--	--	--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제6항, 제16조제7항 또는 제17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이력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수수료	없음
----------	-----	-----	----

작성 방법

- 선임자는 선임이력 확인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 선임 대상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세부내용을 기재한다.
- 선임등급은 특급, 1급, 2급, 3급, 건설현장으로 구분한다.
- 선임구분은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건설현장소방안전관리자로 구분한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 이력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선임사항	선임기간		선임 대상물			
	부 터	까 지	대상물 명칭	선임등급	선임구분	업무대행 선임여부 (Y/N)
총 근무기간						
용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제6항 후단, 제16조제7항 후단 및 제17조제3항 후단에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등 선임이력
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선임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전화	휴대폰
	자격증	등급	자격번호
대상처	대상	연락처	
	주소		
	대상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선임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증	등급	자격번호
	선·해임일	선임일	해임일
	해임사유		
신청사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및 제16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사실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____년 ____월 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신분증
2.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자 등 해임사실 확인서

발급번호: 제 호(. .)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대상처	대상				
	주소				
	대상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선임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자격증	등급		자격번호	
	선·해임일	선임일		해임일	
용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제9항 및 제16조제9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해임사실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발급문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담당자 ○○○(☎)에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업체코드	처리기간 즉시	
소방 안전 관리 대상물	상호	용도		
	소재지			
	건축물 등	지하층	지상층	연면적(㎡)
		바닥면적(㎡)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신고인	[] 소유자	[] 관리자	[] 점유자	
	성명 또는 상호·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자)	성명 또는 상호· 법인명	생년월일 또는 사업 자·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전화)	
	선임일자	자격등급	자격번호	
	· · ·			
	경력기간	최종 교육일자	이메일	
	주소			
선임증 발급	[]발급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선임된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국가기술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또는 수료여부(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다만, 담당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임자가 직접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직원이 위의 담당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선임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인력 연명부

[illegible]

주의사항 : 영 별표 5 비고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함

1.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
2. 야간이나 휴일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을 이용되지 않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의 방재실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소방자동차 중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무인발수차 중 어느 하나를 운용하는 경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즉시	
건설 공사 현황	상호			용도	
	소재지				
	공사기간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건축물 사용승일 예정일			
	공사구분	[] 신축 [] 증축 [] 개축 [] 재축 [] 이전 [] 용도변경 [] 대수선 [] 기타			
공사규모	[] 연면적 15,000㎡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하 2개층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지상 11층 이상				
	[] 연면적 5,000㎡ 이상인 것으로서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공사 시공자 (신고인)	회사명			시공분야	
	주소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선임일자	자격등급 및 자격번호		강습교육 수료일	
	. . .				
	주소				
선임증 발급		[]발급		[]미발급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했기에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2.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수료증 3.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공사 계약서 사본				수수료 없음
담당자 확인사항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일 확인(관할 소방서)				

행정처분 통지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발급번호 제 _____ 호

대상자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주소		전화번호	
	구분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번호 : _____ ☐ 화재예방안전진단기관 지정번호 : _____		
대상명	대상			
	위치			
위반사항	위반법령			
	위반내용			
	위반일자			
	위반횟수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행정처분	처분사항	☐ 자격취소 ☐ 자격정지(개월) ※ 정지기간 : ~ ☐ 지정취소 ☐ 업무정지(개월) ※ 정지기간 : ~ ☐ 경고(시정명령)		
	처분내용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또는 제4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처분합니다.

년 월 일

소방청장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직인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조치명령	대상			용도	
	소재지				
	명령기간				
	등급	[] 특급 [] 1급 [] 2급 [] 3급 [] 기타			
	명령사항	[] 소방대상물 개수 [] 소방대상물 이전·제거·사용금지(제한, 폐쇄)·공사정지(중지) 등 [] 소방안전관리자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명령 [] 소방안전관리업무 이행명령			
	명령내용				
연장신청	기간연장				
	연장사유	[] 천재지변 [] 재난이 발생한 경우 [] 경매 등 사유로 소유권 변동 중 또는 변동 [] 관계인의 질병, 사고, 장기출장 [] 소방대상물 관계인 여러 명으로 구성 의견조정 어려움 [] 관계인 운영 사업의 부도, 도산 등 중대한 위기발생 [] 기타()			
	안전조치계획	※ 필요시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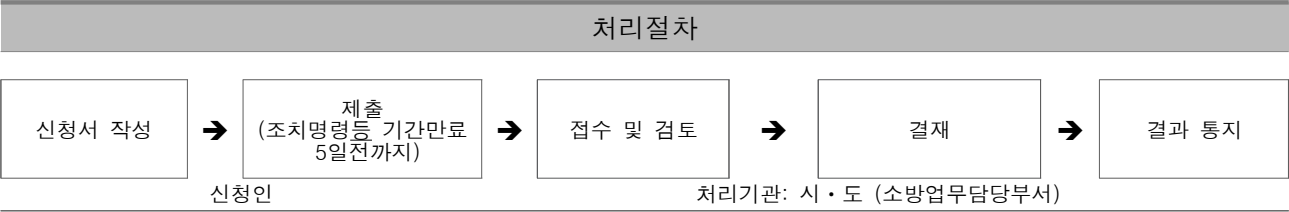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귀하

제출서류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검토사항	연기에 따른 관계인의 안전조치 계획서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